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항 :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

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
② 제10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11. 8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배당주를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배당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0. 27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투자자유 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 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 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 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 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 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 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 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</u>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 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 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 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

		공사가 <u>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--	--	--	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

		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	<u>표준편차 : 15.58%</u> 〈신 설〉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32.90%</u>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 <u>2024.11.8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구 위험등급 분류 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 매 신청 가능시간 〈신 설〉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 매 신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〉</u> <table><tr><td rowspan="2">중도 환매 불가</td><td colspan="2">중도환매 허용</td></tr><tr><td>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</td><td>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</td></tr><tr><td>-</td><td>-</td><td>○</td></tr></table>	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	-	-	○
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								
	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									
-	-	○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10. 27. 기준</u> <u>2024. 9. 30. 기준</u>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만 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 과세 또는 15% 분리과 세 선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 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만 원</u>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500 만원</u> 초과시 종합 과세 또는 15% 분리과 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 는 분부터 적용)							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		
1. 재무정보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0. 27. 기준</u>								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0. 27. 기준</u>								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10. 27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	- -	<u>2024. 9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</u> <u>회사로 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